

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(제49조 관련)

1.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.
 - 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이상의 자격
 - 나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계·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
 - 다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·기계·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(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학위를 포함한다)
 - 라. 6개월 이상의 승강기 설계·제조·설치·인증·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
 - 마.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 기술에 관한 기본교육의 이수
2. 별표 1 제2호바목에 따른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.
3.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그 밖의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.
 - 가.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
 - 나.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이수
 - 다.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의 이수
 - 라.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이수
 - 마.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 운행에 관한 기본교육의 이수